성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2023학년도 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4.01.08.
평의원정수	11명
재적평의원	11명
참석평의원	8명

1. 일　　시 : 2024년 01월 22일 14:00

2. 장　　소 : 성운대학교 충효관 2층 세미나실

3. 임원 출석현황

ㅇ 참석임원

- 교내평의원(8 인) : 오승환, 최영희, 박선희, 임나현, 최은아, 윤명호, 안태연, 박주현

- 외부평의원(0 인) :

ㅇ 불참임원

- 내부평의원(1 인) : 손소연
- 외부평의원(2 인) : 김한양, 정수활

4. 안　건

(1) 학칙 개정안 심의 건

5. 회의내용

14:00 정각에 의장이 평의원정수 11명에 재적평의원 11명, 참석평의원 8명으로 성원됨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오승환) : 금일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의8에 의거하여 평의원정수 11명에 재적평의원 11명, 참석평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장(오승환) : 금회 회의안건은 학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의원님들께서는 배

간서명	평의원	오승환	평의원	최영희	평의원	박선희	평의원	임나현	평의원	최은아	평의원	윤명호
	평의원	안태연	평의원	박주현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부된 회의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전원 : 회의 자료를 검토하다.

평의원(박선희) : 학칙 개정안을 확인해보니 제적 사유의 조정 부분과 학점인정 확대 및 부서, 학부 등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전에 이슈가 되었던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방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제적 기준을 개정한 부분은 학생의 학교생활 수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학점의 인정범위의 확대 부분은 평생교육시대에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전체 학생들과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열을 학부로 변경하고 부서명 및 오타 수정 등 개정안 내용이 학교 운영에 있어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평의원(최은아) : 학적 유지를 위한 필수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학생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기준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요청했던 내용인 학생의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결, 성적처리 등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합니다.

평의원(안태연)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024학년도 모집인원을 포함하여 학칙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은아 평의원님 찬성에 동의합니다.

평의원(박주현) : 재청합니다.

의장(오승환) :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발의와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평의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서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오승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의원님들께서는 찬반 의견을 무기명으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결과 참석평의원 8명 중 8명 찬성 표결함)

간서명	평의원	오승환	평의원	[illegible]	평의원	박선희	평의원	[illegible]	평의원	최은아	평의원	[illegible]
	평의원	안태연	평의원	박주현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의장(오승환) : 참석한 평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학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폐회선언
이상으로 2023학년도 6차 평의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01월 22일

성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오 승 환 (서명)

부의장 최 영 희 (서명)

평의원 박 선 희 (서명)

평의원 임 나 현 (서명)

평의원 최 은 아 (서명)

평의원 윤 명 호 (서명)

평의원 안 태 연 (서명)

평의원 박 주 현 (서명)

간서명	평의원	오승환	평의원	최영희	평의원	박선희	평의원	임나현	평의원	최은아	평의원	윤명호
	평의원	안태연	평의원	박주현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27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재학 기간 중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제 규정 위반자	제27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 2. <삭 제> 3. ----------------- 4. -- 5. <삭 제> 6.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및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제 규정 위반자	● 제적 사유 개정
제30조(학점인정) 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이수한 과정,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직무경험과 교육의 평가인정 결과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칙 및 선행학습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제30조(학점인정) ① 입학생을 대상으로 -- -다만 편입생의 경우, 학습경험인정 학점과 편입학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한 중복인정은 불가하다. ② ~ ⑪ (생략)	● 학점인정 대상 확대
제31조(수업)⑤ 다만, 학사운영상 소속 학과	제31조(수업)⑤ ------------------------------	● 학과 단위

간서명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계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 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학부)장---.	변경에 따른 정정
제33조(교수시간)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33조(교수시간)②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 강사 추가
제36조(출석인정) ① ~ ② (생략) ③ <신 설>	제36조(출석인정) ① ~ ② (생략) ③ 예비군법 제6조(훈련)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 또는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 학생은 예비군법 제10조의 2(학업보장)에 의거하여 그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 예비군 훈련기간 불이익 처우 금지사항
제4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생략) ② <신 설>	제4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생략)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약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연계운영 학점인정
제78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8조(교직원) ① --는 학부에 -------------------------.	● 학과 단위 변경에 따른 정정
제83조(학교기업) ① 생략	제83조(학교기업) ① 생략	● 오타수정

간서명											
평의원	오승환	평의원	권영혜	평의원	박성희	평의원	임사라	평의원	최윤아	평의원	윤명호
평의원	안태연	평의원	박주현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②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해 성운대학교 장학금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기준은 학교기업 세칙으로 정한다.	② -------------------------------- ---------------------------------- 범위 ------------------------------ ------------------------------------ ------------------------------------ ------------------------------------ ------------------------------------ ------------------------------------ ------------------------------------ --------------------------.	
제84조(성희롱 금지) ① (생략) ②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윤정학원 정관 및 인사규정,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84조(성희롱 금지) ① (생략) ② -------------------------------- ---------------- 예운학원 -------- ------------------------------------ ----------------------------------.	● 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정
제98조(행정사무) ①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며, 교내 정보와 업무와 관련하여 학사지원처 전산팀을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업부의 부서로 한다.	제98조(행정사무) ① 교내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센터를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업무 부서로 한다	● 전산팀 → 전산정보센터 변경에 따른내용 개정

간서명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signature]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